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이호대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 144 호

다. 발의일자 : 2018. 9. 19.

라. 회부일자 : 2018. 10. 1.

2. 제안이유

서울 전 지역에서 지하 공간 개발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내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지반침하¹⁾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반침하 방지와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주민의 공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2014.8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등 '18.9월 말 기준 최근 5년간 총 198건의 도로함몰 등 지하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적극 공감할만하고 시의적절하다 하겠음.

[표] 도로함몰 등 지하안전사고 발생현황(2014.7월~2018.9월)

| 연도 | 2014 (7월~12월) | 2015 | 2016 | 2017 | 2018 (1월~9월) |
|------|------------------|------|------|------|-----------------|
| 계 | 7건 | 56건 | 85건 | 28건 | 22건 |
| 198건 | | | | | |

[표] 조례안 구성 현황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
| 구성 | 내용(요약) | 비고 |
| 제1조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 제2조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지반침하, 지하개발, 지하시설물 | 법 제2조 |
| 제3조 (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 법 제3조 |
|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관리계획 포함사항 | 법 제7조 및 영 제7조 |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 | | |
|----------------------------------|---|---|
|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 법 제12조 및 국토교통부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
| 제6조 (위원회의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 |
| 제7조 (위원장의 직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위원장 직무 대행 | |
|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개최 및 의결 안건 심의 간사 임명 | |
| 제9조 (위원의 해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해촉 사유 | |
| 제10조 (수당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 |
| 제11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구역의 지하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가능 | 법 제34조 |
| 제12조 (시행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

■ 관련법 현황

-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는 '16.1.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7.11.21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2018.1.1일자 시행에 들어간 상태임.
- 법 제6조부터 제8조²⁾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2)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집행계획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시·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시·군·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시·도지사는 상기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7.12월 완료한 후 현재까지 내부검토 및 조율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법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상기 법 제12조제2항의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17년 9월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상태이며,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도로관리과)는 이를 근간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018.9.13~10.4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음.
- 따라서 의원발의안인 본 조례안 역시 주요골자 중 하나가 지하

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10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역시 국토교통부 조례 표준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만일 본 조례안이 집행부 입법예고안 의회제출에 앞서 의결될 경우 집행부 입법예고안은 차후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 조례안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 목적은 법 제1조3)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어 조례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지반’, ‘지반침하’, ‘지하개발’, ‘지하시설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데, 법 제2조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3) 책무(안 제3조 관련)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역시 법 제3조제1항4)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 관련)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법 제7조제1항5)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 제7조제1

-
-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법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항6)을 인용하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올해 4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용역을 법에 근거하여 이미 발주한 상태로 2019.2.28 일 준공 예정에 있고, 이 용역을 통해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집행계획 과 연계한 지반침하 예방정책 등을 도출할 예정임.

5)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관련)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영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점을 감안할 때,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국토교통부 표준안과 비교해보면 본 조례안 역시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안 제5조(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만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국토교통부 표준안에서는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심의 대상에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 표준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파악되는바,

[표] 안 제5조에 대한 국토교통부 표준안과의 비교

| 본 조례안 | 국토교통부 표준안 |
|--|---|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p>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p>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p> <hr/> <p>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 |

- 안 제5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자문” 로 수정하여 자문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의·자문 대상에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안 제5조 수정안

| 본 조례안 | 수정안 |
|---|--|
| <p>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p> <p>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 <p>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 <p>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u>심의·자문</u>----- -----</p> <p>1. (조례안과 같음)</p> <p>2. <u>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u></p> <p>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 <p>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

- 또한, 국토교통부 표준안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와 제척·기피·회피(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이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 국토교통부 표준안 작성 당시 법제처가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규정7)에 의거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3. (생략)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지하안전위원회는 그러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 본 조례안에 국토교통부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위원회 운영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붙임] 참조)
- 추가적으로, 안 제10조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례를 인용하여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안 제10조의 수정안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수당</u>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6)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 이는 법 제34조8)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11조제1항에서 인용하면서,
- 이와 함께 제2항부터 제4항에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인에게 권고 및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대신 결과 공표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법 제34조를 살펴보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법 제34조제1

8)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항)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법 제34조제2항)하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 시·도지사에게는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법 제34조제5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안 제11조제3항의 현장조사 결과 공표에 있어서는 공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필요 이상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국토교통부 표준안 대비 본 조례안 조문비교표

[붙임] 국토교통부 표준안 대비 본 조례안 조문비교표

| 국토교통부 표준안 | 본 조례안 |
|--|--|
|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한다. 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국토교통부 표준안 | 본 조례안 |
|---|--|
| <p>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p> | |
| <p>제5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 |
| <p>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 |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 <p>제7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p>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p>제8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p> | |

| 국토교통부 표준안 | 본 조례안 |
|---|--|
| <p>에서 제척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 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 |
| <p>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p> |

| 국토교통부 표준안 | 본 조례안 |
|--|--|
| <p>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p> | <p>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p> <p>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p> |
|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p>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